

의안번호	2220311
의 퇴 인	곽규택 의원
회 답 일	2026. 8. 21.
추계번호	26A38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3조제2항 신설 (재정지원)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또는 운영 수입 부족에 따른 시설 운영 곤란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3조제2항 신설 (재정지원)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¹⁾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또는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시설 중 사용료의 적정수준 유지 또는 시설 운용 유지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시설, 해당 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규모 및 국가 보조 비율은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1) “귀속시설”이란 동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

-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은 각 사업별 실시협약(사용료, 사업수익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와 사용 수요 변동, 운영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객관적인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서 국가의 지원 비율과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등 8가지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총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총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총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총 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